옥천군의회 공고 제2019 - 10호

옥천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「옥천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제66조의2(조례안예고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4월 23일

옥 천 군 의 회 의 장

1. **자치법규명** : 옥천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대표 발의자 : 임만재 의원)

2. **발의의원 : 임만재, 김외식, 유재목 의원**

3. 개정이유

○ 취약계층 등의 작은 영화관 관람료를 할인해 줌으로써 주민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○ 관람료 할인 규정 신설
(안 제5조 제2항 및 제3항)

5. 의견제출

○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3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(☎043-730-3943, FAX 733-9225)

※ 의견통지내용

가.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 · 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 · 단체일 경우 기관 ·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6. 의견제출

○ 옥천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○ 의견서 1부.

옥천군 조례 제 호

옥천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옥천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관내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인당 2천원의 관람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.

1. 취학 전 어린이와 초·중·고생을 비롯한 청소년
2. 장애인
3. 국가유공자 및 군인
4. 만65세 이상 어르신

③ 25명 이상 단체관람도 1인당 1천원씩 할인받을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　　　행	개　정　안
제5조(관람료) (생　략)	제5조(관람료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신　설>	② 관내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인당 2천원의 관람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. 1. 취학 전 어린이와 초·중·고생을 비롯한 청소년 2. 장애인 3. 국가유공자 및 군인 4. 만65세 이상 어르신
<신　설>	③ 25명 이상 단체관람도 1인당 1천 원씩 할인받을 수 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○ 조　　례　　명 : 옥천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　　　　　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 례 안	의　　견